1. 법률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유동화수익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적용 예외)

1. 법률*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6/10/13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

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(제119조 제2항 제8호 신설)

— 제118조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

—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(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을 말한다)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가 신설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보도자료 및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